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6조 관련)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식 <			

(비지 포함)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9. 기타 식품가공부산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0. 조류(藻類)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1. 섬유질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2. 섬유질가공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3. 섬유질발효사료	가. 공장건물 나. 계량시설 다. 포장시설 라. 수송장치 마. 혼합시설 바. 저장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

		장설비를 갖추는 것 2) 탈수한 전분박(澱粉粕)의 저장설비에는 뚜껑을 갖추는 것
	사. 탈수시설*	생산능력에 알맞은 탈수시설을 할 것
14. 제약부산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악취제거시설* 사. 정수시설*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5. 식물성유지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16. 전분류	가. 공장건물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나. 저장시설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추는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추는 것 3) 생산공정 중에 필요한 중간원료와 부형제(浮衡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저장능력을 설비를 갖추는 것
	다. 계량시설	일정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갖추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 것
	라. 포장시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량 단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 것
	마. 정수처리시설*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정제수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원료투입 및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 것
	바. 용해 및 여과 시설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전분유액을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전분유액을 여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사. 알파화시설	전분유액을 알파화시킬 수 있는 건조기설비와 이를 순간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스팀공급설비를 갖추는 것
	아. 분쇄 및 체별	수요자가 요구하는 평균 입도(粒度)에

		시설	맞게 분쇄·체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되, 생산능력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 것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17.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동 물 성	18. 도축 및 가공도축 부산물, 수지박 (우지박, 돈지박을 포함한다), 육가공 부산물, 육분, 육 골분, 육즙흡착사 료,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형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다만, 삶는 시설은 육골분의 경우 140℃에서 1시간 이상, 혈분의 경우 135℃에서 10분간 가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19.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혼합한 각각의 동물성단백질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의 제조시설 외에 동물성단백질 혼 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시설을 갖추 것	
	20. 모발분, 우모분, 제각분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압착시설 마. 고형분리시설*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아. 먼지제거시설 자. 악취제거시설 차.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타. 삶는시설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는 설비 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추 것
	21. 새우분, 어류의	가. 공장건물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가공품 및 부산물, 어분, 어즙흡착 사료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삶는시설	고열 수증기로 원료를 삶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자. 압착시설	삶은 원료를 압착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갖추는 것
	차. 고품분리시설	압착 과정에서 흘러나온 용액에서 고품 물질인 침전물(어육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카. 유수분리시설	고형 분리를 거친 용액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타. 농축시설*	고형 분리과정과 유수 분리 과정에서 분리된 용액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어즙흡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파. 악취제거시설 하. 정수시설	제7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 어선에 대한 특례: 제조시설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가목, 바목, 사목, 카목, 타목, 파목 시설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2. 유도단백질(가수분해·효소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품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파. 가수분해시설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추는 것

23. 피혁가공분말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건조시설 마. 분쇄시설 바. 먼지제거시설 사. 악취제거시설 아.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차. 가수분해시설	크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갖추 것
24. 기타 동물성단백질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삶는시설 마. 압착시설* 바. 고품분리시설* 사. 유수분리시설* 아. 농축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하.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거. 가수분해시설*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추 것
	너. 냉동·냉장 및 가열처리시설*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관리되는 설비를 갖추 것
25. 골분, 골회, 어골분, 어골회, 패분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자. 정수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26. 동물성 유지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삶는시설 바. 압착시설 사. 고품분리시설* 아. 유수분리시설* 자. 건조시설 차. 분쇄시설 카. 먼지제거시설 타. 악취제거시설 파. 정수시설	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하. 분리시설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27. 곤충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28. 플랑크톤류, 단 세포단백질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바. 발효·배양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발효·배양시설을 갖추는 것
	※ 「식품위생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환경 관련 법규에 따른 공해방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을 갖추는 경우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로 같음할 수 있음	
29. 낙농가공부산물류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아. 악취제거시설*	제21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자. 정수시설*	
광 물 성	30. 식염류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준함	
	31. 인산염류, 칼슘염류 및 광물질류과의 합제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정선시설*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선설비를 갖출 것
		자.탈불시설(인산염 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 외한다)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다만,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 체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차. 불소정화시설*	탈불(脫弗)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를 제 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다만, 탈 불시설을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광물질류 및 그 합제(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및 인산염류 또는 칼슘염류와 광물 질류과의 합제 제외)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먼지제거 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농축시설 자. 용해시설 차. 여과시설 카. 결정세척시설 타. 소성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것
기	33. 기타 유지류	제18호의 시설기준과 같으며,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 것(혼합성유지는 먼지제 거시설을 제외할 수 있고, 불해성 지방·분말유지는 삶는시 설·압착시설·유수분리시설·건조시설·정수시설을 각각 제외할 수 있음)	

34. 남은음식물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건조·냉각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냉각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습식제조시설인 경우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 [분쇄 또는 정선(精選)을 말한다]하는 경우
	자. 악취제거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추는 것
	차. 이물질제거시설	쇠붙이·비닐·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
	카. 가열시설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2) 수분 14퍼센트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 또는 정선을 말한다)하는 경우: 가열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35. 혼합제(혼합성 단미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건조시설*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기타*	필요시 혼합한 각각의 단미사료 시설기준을 갖출 것
--	--	--------	-----------------------------

※ 비고

- 1)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미사료별로 위 표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수분리시설, 배양시설, 알파화시설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1)에도 불구하고 제18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3호 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가금류 부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3) "*" 표시가 있는 시설은 단미사료 제조공정 또는 포장방법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갖추지 않을 수 있다.